

## 2. 消防法 施行令中 改正令

지난 4월 4일 소방법 개정에 이어서 시행령 개정령이 11월 6일 공포 되었다. 同改正令中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며 또한 내무부에서는 동시행령에서 제외한 소방시설 및 위험물시설 기술 기준령도 심의중에 있어 금년내에 공포될 것이라고 한다.

### 1. 改正理由

- 건축 동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
- 소규모 소방대 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여 국민의 소방 시설 설치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하고
- 농어촌지역 위험물 판매취급소의 위험물취급량의 상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국민 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
- 소방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상의 관련조문을 정비 보완하기 위함

### 2. 主要改正內容(要約)

(1) 건축허가 등에 대한 소방관서의 동의에 있어서 주택 및 3층이하의 공동주택등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완화함(제 4 조).

(2) 방염처리대상 특수장소가 다음과 같이 완화 또는 강화됨(제 11 조)

방염처리대상물	현 행	개정
공장, 도서관, 시장, 백화점, 학교, 공동주택, 지하가	전부	삭제
캬바레, 맨스홀	전부	연면적 100 평 이상
의원, 조산원등 종전 병원이 아닌곳으로 입원실이 있는곳	해당없음	전부
유흥음식점	연면적 200 평 이상	연면적 100 평 이상
대중음식점	해당없음	지하층에 설치된 것으로 연면적 100 평 이상

※ 기타 특수장소는 현행과 동일함.

(3) 특수가연물에 합성수지류 추가(제 12 조 제 2 항, 별표 4)

품명	수량
합성수지류	발포시킨 것 20.m <sup>3</sup>
	기타의 것 3,000 kg

“합성수지류”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제품, 합성수지반제품, 원료합성수지 및 합성수지 부스러기를 말하며 고무류, 섬유류 및 지류와 같은 부스러기를 제외함.

④ 소방시설의 종류중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에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추가하여 연면적 1,000 m<sup>2</sup> 이상의 지하가에는 설치토록 하고 경보설비중 스방판서에 통보하는 화재속보설비 및 비상경보기구를 제외함(第13조 및 第21조)

5) 복합건축물은 소방시설을 적용(지하가 제외)함에 있어서 그 용도별로 각각 1개의 소방대상물로 보도록 함. 다만,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복합건축물은 각 용도별 해당 수치를 제17조 내지 제19조에서 규정된 용도별 기준 수치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일 때는 소방시설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유도등과 유도표지가 경합하는 층에 있어서는 유도등을 설치토록 함.

- 가. 연면적 1,000 m<sup>2</sup> 이상인 건축물
- 나. 지하층, 무창층 또는 3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 m<sup>2</sup> 이상인 건축물(第15조 및 第22조)

⑥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특수장소를 통합 분류

종전에는 소방시설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방시설별로 적용대상 특수장소(20개항) 및 면적을 표시함으로써 상당히 복잡하였던 결점을 개선하여 특수장소를 아래와 같이 6가지로(산림, 아케이드 및 舟車는 특수장소에서 제외) 통합, 분류하여 특수장소별로 설치대상 소방시설을 명시 함으로써 간편화 함

특수장소의 분류 대비

개정	현행 (별표 1)
제 1 종 장 소	1, 2, 3, 4, 5, (공동주택 제외) 6, 9
제 2 종 장 소	5 (4층이상 공동주택) 7, 8, 10, 11, 12, 15.
제 3 종 장 소	13, 14
지정문화재	17
지하가	18 (나)
복합건축물	16

⑦ 화재위험도가 낮은 소규모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의무를 완화함(제17조~제22조)  
: 소방시설 조건표 참조(부록)

⑧ 포소화기의 소화약제충진, 소방설비의 표시등, 유도등의 광원 교체등 경미한 공사는 소방설비기사가 아니라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함(第27조)

⑨ 주유취급소에서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외에 실소비자에게도 위험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(第34조 第1號)

⑩ 제2종판매취급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수량을 종전에는 지정수량의 5배이상 15배 미만이던 것을 지정수량의 5배 이상 20배(단위농업협동조합이 경영하는 경우와 면단위이하 지역의 경우에는 35배) 미만으로 확대함(第34조 第2號 나목)

⑪ 소방용기계, 기구등 제조업체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, 위험물제조소등 허가 등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각각 위임함(第62조)

⑫ 소방법의 개정으로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된 소방시설의 설치, 유지기준 및 위험물제조소 등 의 시설 기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.

### 3. 本・支部 點檢業務 實務者 會議 開催(下半期)

지난 10월 7, 8일 양일간 본·지부의 과장급 이상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점검 실무자 회의가 개최되었다.

本會議에 앞서 조창현 점검담당이사는 훈시를 통해 協會는

• 금융 Pool의 단계적 해제로 수입 감소 등의 난관이 예상되나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이에 대처하고

• 시험소 설립은 시행착오가 없도록 총력을 집중, 사전준비를 완벽하게 해 나갈 것이며,  
• 기술직원의 해외연수는 계획과 준비를 충분히 하도록 하여 최대한의 연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며

• 또한 협회를 국가적인 종합방재기관으로서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여야겠으며,  
• 이를 위해서 전 직원은 자체 실력 배양과 일치단결에 힘써줄 것을 역설했다.

本會議中 방재연구부의 이한연과장의 「'82년도 기술부서 운영방침」이 전달되었다.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

-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위험조사를 확대 실시하고
- 안전점검업무를 개선하여 점검의 內實化를 기하며
- 전직원의 능력 향상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
- 방재기술의 보급 확대로 對民 奉仕 업무를 적극 추진할 것 등이다.

한편 점검 1부의 이신근대리는 「해외 연수보고」를 통하여 영국보험대학(C.I.I)에서 수강한 각종 보험기초이론과 영국재보험회사(M&G)에서의 재보험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 과정 및 내용을 보고하였으며,